

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크리스트 [대기배출시설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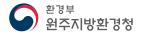


점검일 년

점검사항 및 주요확인사항	관련법조(법명: 대기환경보전법)	체크		
 인허가 관	련			
대기배출시설 여부 확인 • 업종 및 시설 분류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여부 확인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 분류 참고)	• (대기배출시설) 법 제2조제11호, 시행규칙 제5조 별표3			
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여부 • (대상)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허가대상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(대상시설 관련법조 참고)	 (허가) 법 제23조, 시행령 제11조제1항 (특정대기유해물질) 법 제2조제9호,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(특정대기유해물질 적용기준)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			
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여부 • (대상) 허가대상 이외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	• (신고) 법 제23조, 시행령 제11조제2항			
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 신고(허가) 여부 • (변경전 허가 · 신고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증설 · 교체 · 폐쇄, 배출시설 용도 추가, 원료 · 연료 변경, 그 외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 변경 • (변경후 신고)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, 대표자 · 사업장명 변경 등	• (변경허가) 법 제23조, 시행령 제11조제4항 • (변경신고) 법 제23조, 시행규칙 제27조			
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여부 •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 · 변경을 완료한 경우 가동개시 신고 후 조업	● 법 제30조, 시행령 제15조			
 배출시설 및 방지시 [,]				
자기측정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• 자가측정 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※ 신고하지 않은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배출여부 검사 · 확인	• (자가측정) 법 제39조,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• (배출허용기준) 법 제16조,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			
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• 방지시설 정상운영(여과물교체, 약품투입 등) • (금지행위) 공기희석, 공기조절장치 및 가지배관 설치, 시설의 부식 · 마모 · 훼손 등 방치,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• 연료 황함유 기준 준수	• (시설운영) 법 제31조제1항제1호~5호 • (연료) 법 제41조, 시행령 제40조 별표10의2			
측정기기 부착, 운영	● 법 제32조, 시행령 제17조 별표2 · 별표3, 시행규칙 제37조 별표9			
운영일지 작성 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매일 기록 및 보존	● 법 제31조제2항,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7호서식			
환경기술인				
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및 자격기준, 준수사항 • 환경기술인은 임명 및 사업장에 상근 등의 준수사항 준수 (관련법조 참고)	● 법 제40조, 시행령 제39조 별표10, 시행규칙 제54조			
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• 최초교육: 최초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• 보수교육: 최초 교육 후 3년 마다 실시	● 법 제77조제1항, 시행규칙 제125조			
	대기배출시설 여부 확인	• 엄중 및 사설 보류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여부 확인 (대기변경보조법 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 보류 환기) (대기배출시설 설치 하기 여부 (대상) 등 전대기유해물질이 하기대상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(특정대기유해물질 법제조제으로 시행규칙 제2조로) 설명규칙 (특정대기유해물질 법제조제으로 시행규칙 제2조로) 설명표원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라건 소명부 (대상) 하기대상 이외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(변경전 하가 신교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증실 · 교체 · 폐배소 배출시설 모두 추가, 현교 · 연교 변경, 그 의 하기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 변경 전입시간 변경 소업시간 변경 (변경환 신괴)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, 대표자 · 사업증명 변경 등 (변경환 신괴) 내로운 오염물질 배출, 대표자 · 사업증명 변경 등 (변경환 신괴) 내로운 오염물질 배출, 대표자 · 사업증명 변경 등 (변경환 신괴) 내고운 오염물질 배출, 대표자 · 사업증명 변경 등 (변경환 신괴) 보지2조로, 시행경 제11조제4항 (변경환 신교) 보지2조로, 시행경 제15조로 (변경환 기준은 수여부 확인 * 소진 20점 (경본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배출여부 검사 · 화인 요청검사설과 대기주상기를 부보권) (자가측정 범 제39조로, 시행규칙 제5조로 별표 1 (배출하환 기준) 법 제31조제 1원제 2 · 5호 * (면료) 법 제41조로, 시행경 제40조로 별표 11인 2 · 환경기 기본 수 등 병치, 병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으면로, 함하고 기존 소설 * 보고 1가 정상가동 여부 확인 * 급지행에 의 국기기 점소기를 장보하고 부탁 및 거짓되성 등 * 관광기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* 급지행에 의 조기기 조소, 측정결과 부탁 및 거짓되성 등 * 관광기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* 급지행에 의 조기기 조소, 측정결과 부탁 및 거짓되성 등 * 관광기기 정상가도 여부 확인 * 급지행에의 국기기 조소, 측정결과 부탁 및 거짓되성 등 * 관광기 1술인 일명 역부 및 자격기준, 준수사형 * 배출기술인 일명 역부 및 자격기준, 준수사형 * 관광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* 최초교록, 최조 임원일로부터 1년 이내실시 * 법제40조, 시행령 제39조 별표 10, 시행규칙 제54조 (변리원 조심)		



- 참고 1. 위 체크리스트 내용은 2018. 11월 법령 기준으로 제작
 - 2. 최신 법령 조회 방법: 국기법령정보센터 접속(http://www.law.go.kr)에서 '대기환경보전법' 검색 ▶ 최신법령을 조회하여 각 규정의 세부내용 확인 및 이행 필요



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크리스트

[폐수배출시설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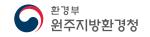
점검일 년 월

번호	점검사항 및 주요확인사항	관련법조(법명: 물환경보전법)	체크		
	인허가관	면 			
1	폐수배출시설 여부 확인 ●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.01㎡ 배출하거나 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.1㎡ 배출하는 시설 등(시행규칙 별표4 참고)	 [폐수배출시설] 법 제2조제10호,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[특정수질유해물질] 법 제2조제8호,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			
2	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여부 ● (대상)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	• (허가) 법 제33조, 시행령 제31조제1항 • (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)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13의2			
3	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여부 ● (대상) 허가대상 이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	• [신고] 법 제33조, 시행령 제31조제2항			
4	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신고(허가) 여부 • (변경전 허가 · 신고) 폐수배출량 증가 또는 감소,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, 폐수처리 방법 및 공정 변경, 시설 일부 폐쇄 등 • (변경후 신고) 대표자 · 사업장명 · 소재지 변경, 폐수 위탁처리업체 변경, 시업장 전부 폐쇄 등	• (변경허가) 법 제33조, 시행령 제31조제3항 • (변경신고) 법 제33조, 시행규칙 제38조			
5	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여부 ●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·변경을 완료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 후 조업	● 법 제37조, 시행령 제34조			
	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련				
6	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● 최종방류수 수질상태 확인(별도 수질 분석을 통해 확인)	 법 제32조,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※ 산업 · 농공단지는 별도배출허용기준 확인 			
7	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• 방지시설 정상운영(약품투입, 처리수질확인, 슬러지처리 등) • (금지행위) 비밀배출구설치 및 무단방류, 희석행위,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	● 법제38조제1항제1~4호			
8	축정기기 부착, 운영 ● 적산전력계, 유량계 설치유무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●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여부 확인 ● (금지행위) 측정기기 조작, 측정결과 누락 및 거짓작성 등	• 법 제38조의2제1항, 시행령 제35조 별표7			
9	운영일지 작성 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매일 기록 및 보존	 법제38조제3항,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18~20호서식 			
	환경기술인				
10	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및 자격기준, 준수사항 ● 환경기술인 임명 및 준수사항 준수(관련법조 참고)	● 법 제47조, 시행령 제59조 별표17			
11	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● 최초교육: 최초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● 보수교육: 최초 교육 후 3년 마다 실시	• 법 제67조제1항, 시행규칙 제93조			

1. 위 체크리스트 내용은 2018. 11월 법령 기준으로 제작 참고

⋄⋄⋄ ⋙

- 2. 최신 법령 조회 방법: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(http://www.law.go.kr)에서 '물환경보전법' 검색
 - ▶ 최신법령을 조회하여 각 규정의 세부내용 확인 및 이행 필요





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크리스트 [사업장폐기물 배출자]

점검일 년 월 일

번호 점검사항 및 주요확인사항 관련법조(법명: 폐기물관리법) 체크 인허가 관련 (공통) 사업장폐기물의 지정폐기물 여부, 수탁자 처리능력 확인 • 법 제17조제1항, 시행규칙 제16조의5 및 제17조 • 지정폐기물로 분류 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 지정폐기물 여부 확인(폐기물 분석결과서 보관) • (지정폐기물의 종류) 시행령 제3조 별표1 • 폐기물 위탁시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• [지정폐기물 유해물질 기준]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폐기물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 확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여부 • (대상)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• 대상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확인 • 대상일 경우 관할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실시 법 제17조제5항.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2 • (변경확인) 법 제17조제6항, 시행규칙 제18의2제7항 · 제8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여부 • 지정폐기물 월 평균 배출량 30% 이상 증가, 새로운 지정폐기물 배출,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및 처리자 변경, 사업장 상호 ·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여부 • (대상) ① 1일 평균 300kg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② 대기 · 폐수 · 소음 · 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 : 1일 평균 100kg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• 대상일 경우 관할 시 · 군에 배출자 신고 실시 • 법 제17조제2항,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※ 배출자 신고 미대상일 경우, 폐기물 배출량 근거자료 보관 • (변경신고)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여부 • 사업장폐기물 월 평균 배출량이 50% 이상 증가, 새로운 사업장 폐기물 배출, 폐기물 처리방법 및 처리자 변경, 시업장 상호 ·

폐기물 보관 등 처리 기준 관련

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준수 여부

소재지 등이 변경 되는 경우 등

- 폐기물 혼합 보관 금지, 수집 · 운반 ·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 흩날리거나 침출수 유출 되지 않도록 조치
- (보관시설) 바닥이 포장되고,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
- (보관기한) 사업장폐기물 보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(위탁) ※ 지정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상이함. 시행규칙 별표5-4.나.6) 참고
- (폐기물위탁) 적정한 처리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
- 기타 폐기물별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 준수(관련법조 참고)
- (폐기물 보관기준) 법 제13조, 시행령 제7조,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
- (폐기물위탁) 법 제18조제1항

올바로시스템 입력 관련

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 및 실적보고 실시

- [인계 · 인수] 폐기물을 처리계획에 따른 운반자에게 인계할 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
- (실적보고) 매년 2월까지 전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보고
- (인계 · 인수) 법 제18조제3항, 시행규칙 제20조 별표6
- (실적보고) 법 제38조, 시행규칙 제60조

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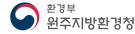
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이수

-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
-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
-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 법제35조제1항, 시행령제17조제2호 · 제3호.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

참고 1. 위 체크리스트 내용은 2018. 11월 법령 기준으로 제작

- 2. 최신 법령 조회 방법: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(http://www.law.go.kr)에서 '폐기물관리법' 검색
 - ▶ 최신법령을 조회하여 각 규정의 세부내용 확인 및 이행 필요





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크리스트 [비산먼지 발생사업]



점검일 년 월 일

번호	점검사항 및 주요확인사항	관련법조(법명: 대기환경보전법)	체크		
인허가 관련					
1	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● (대상) 건설업, 시멘트제조업, 비금속광물 채취업 등 ※ 신고대상사업 세부내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	 법 제43조제1항, 시행령 제44조,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 			
2	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여부 ●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, 사업 규모 증가 및 종류 추가, 비산 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, 공사기간 연장 하는 경우 등	• 법 제43조 제1항, 시행규칙 제58조제1항·제2항			

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관련

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

-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
 - ※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시설 및 조치 기준 참고
- 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별표 14

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 기준 주요내용

야적

3

-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 덮을 것
- 아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/3 이상의 방진벽 설치하고 그 위로 아적물질 최고저장높이의 1.25배 이상의 방진망 설치
- 공사장의 경계에는 1.8m 이상 높이의 방진벽 설치 (공사장 경계로부터 50m이내 주거 ·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3m 이상 높이의 방진벽 설치)
- 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고 보관시설 출입구는 방진 망을 설치

분체상 물질의 싣기 및 내리기

- 참고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
 - 시설 설치하고 작업시 살수 실시
 -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
 - 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
- 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별표 14

수송

-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 설치
-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까지만 적재물 적재
-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
- 공사장 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 할 것

이송

• 야외 이송시설은 덮개를 설치해 완전 밀폐화할 것

참고 1. 위 체크리스트 내용은 2018. 11월 법령 기준으로 제작

- 2. 최신 법령 조회 방법 :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(http://www.law.go.kr)에서 '대기환경보전법' 검색
 - ▶ 최신법령을 조회하여 각 규정의 세부내용 확인 및 이행 필요

